

#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10월 2일 평창군수(농업경영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10월15일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업경영과장 백순규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 
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전시판매 품목(안 제5조)
-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- 위탁의 취소사항 규정(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- 현재 도암 면사무소옆 황계리 355번지에 사업비 10억원(국비5억, 도비 1억 5천, 군비 3억 5천)을 투자하여 건평150평(지상2층)의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이 '99. 11.20일 개장예정(공사진척 90%)에 있자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골자를 보면 운영은 군수의 직영, 법인 또는 단체, 일반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전시판매 품목은 일반생필품과 도내 농·축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규정과 자구등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경영수지, 위탁시 위탁업체의 이윤추구에 따른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, 황계지역 상가들의 불만요소를 사전 충분히 파악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: 평창군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1부